



제 418회 국회(정기회)
제 2 차 교 육 위 원 회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〉

■ 강경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401호)

2024. 9.

교 육 위 원 회

전문위원 강대훈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강경숙의원 등 14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7. 30.

다. 회 부 일 : 2024. 7. 3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마련된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조언·상담·주의·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,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교에 학생생활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
최근 학생,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심사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< 최근 4개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>

(단위: 건)

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	1,197	2,269	3,035	5,050

자료: 교육부

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침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, 지난 2023년 9월 「교원의

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35호, 시행 2024.3.28.)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¹⁾하는 등 새로운 보호조치가 도입되었는데,

학교 내 즉시 분리 장소로 활용되는 Wee클래스²⁾의 경우 전체 12,100교 중 8,863교(73.2%)에만 설치되었으며, 특히 초등학교 6,178교 중 3,693교(60%)에만 설치되는 등 미설치된 학교가 많음.

또한,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며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교사 수는 더욱 부족한데, 전체 12,100교에 4,776명(39.5%)만 배치되어 있으며, 초·중·고교 모두 Wee클래스 수에 비해서도 부족한 실정임.³⁾

< Wee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>

(단위: 개, 명)

구분	초	중	고	특수	기타	계
학교 수	6,178	3,265	2,380	194	83	12,100
Wee클래스 수	3,693	2,843	2,212	78	37	8,863
전문상담교사 인원	1,657	1,713	1,328	47	31	4,776

* 학교 수와 Wee클래스는 2023년 4월, 전문상담교사 인원은 2022년 10월 기준임.

자료: 교육부

- 1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0조(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)
 -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(이하 “분리조치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27.>
- 2) Wee클래스는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로,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, 자문,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내·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·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(「Wee프로젝트 사업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참고)

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인력 및 시설을 충원하려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Wee클래스가 없던 학교에 이를 설치함으로써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즉시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, 전문상담교사 인원 등을 확충하여 상담에 대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,

기타 지원인력 투입, 비상 연락 시설 설치,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어 학생생활지도 전반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학생생활지도는 그 범위가 넓으며 교육행정 주체별로 다양한 업무를 분담⁴⁾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소요비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⁵⁾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3) 전문상담순회교사 826명(2022년 10월 기준)을 교육청에 추가로 배치하여 고위기학생 내방상담 및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에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, 이를 합친 전문상담교사 전체 인원은 5,602명으로 전체 학교 수 대비 46.3%에 불과함

4)

교육행정주체	학생생활지도 업무 범위
교육부	제도개선 및 법령 제·개정, 법령·고시 적용상의 해석·질의 답변지원 등
시·도교육청	지침 등 현장 적용 및 연수지원과 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갖추어야할 제반 학교여건(분리장소, 지원인력, 비상 연락 시설 등)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
학교장	현장에서 필요한 제반지원 사항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지원, 학교구성원 대상 고시 내용 홍보 및 교육·연수추진, 단위학교 총괄책임자로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 수립 등

5) 동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국회예산정책처, 추계번호 24C2425)에서 발췌

교육부는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제2항을 신설('23.9.27.)⁶⁾하여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고,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정('23.9.1.)을 통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였는 바,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.

참고로,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.

의안번호	대표발의 (발의일)	주요 내용
2200903	임오경의원 (2024.6.25.)	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
6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7.>

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23. 9. 27.>

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(금지 행위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
5.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)
6.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
제71조(벌칙)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2.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(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)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문 의 처
02)6788-5184